

1. 개정이유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페달 오조작방지장치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튜닝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등의 장치에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 하며,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21817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튜닝 안전성 확인 대상·확인기준·절차 및 안전성 확보 튜닝의 지원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으로 차종 변경 확대 등 튜닝의 승인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으로 차종 변경 확대(안 제55조제2항)

- 1)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있는 경우 튜닝으로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만 차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승용자동차가 승합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용
- 2)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있는 경우 튜닝으로 승용자동차 또는 승

합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를 허용
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확대(안 제55조의3)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추가 장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확대

다. 튜닝안전성확인장치 대상·확인기준·절차를 정함(안 제56조의4부터
제56조의6까지, 안 별지제34호의6서식, 안 별지제34호의7서식)

- 1) 튜닝안전성확인장치 대상은 튜닝승인대상 장치로서 튜닝 전·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2) 튜닝안전성확인장치는 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고,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 3) 튜닝안전성확인장치의 신청, 안전성 확인 여부 결정, 인증서 발급 등 튜닝안전성확인장치 절차를 규정

라. 안전성 확보 튜닝 비용의 지원 절차를 정함(안 제56조의7)

- 1)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을 한 자에게 장치 및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2) 원활한 튜닝 비용 지원을 위하여 튜닝 비용 지원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대행토록 함
- 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규모 및 신청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공고토록 하며, 공고 시 지원 대상은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안전성 확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마. 자동차제원표의 오타 수정(안 별지 제25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승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튜닝하거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다.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튜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튜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의3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튜닝 작업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추가 장치 제56조의4부터 제56조의17까지를 각각 제56조의8부터 제56조의21까지로 하고, 제56조의4부터 제5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4(튜닝안전성확인장치) ① 법 제34조제4항에서 “페달오조작방

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장치(이하 “튜닝안전성확인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1. 영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차축으로 한정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로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에 해당될 것
 2. 해당 장치로 튜닝 시 튜닝 전·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튜닝안전성확인장치의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5(튜닝안전성확인장치 확인기준)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튜닝안전성확인장치의 확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을 것
 3. 튜닝 과정에서 안전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없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튜닝안전성확인장치의 확인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6(튜닝안전성확인장치 확인절차)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튜닝안전성확인장치로 안전성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6서식 튜닝안전성확인장치 안전성 확인 및 확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확인을 받으려는 튜닝장치의 제원,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
 3. 확인을 받으려는 튜닝장치의 외관도
 4. 확인을 받으려는 튜닝장치에 관한 사후관리계획서
 5. 그 밖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튜닝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성 확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성 확인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확인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 결과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7서식 튜닝안전성확인장치 확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튜닝안전성확인장치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확인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6서식 튜닝안전성확인장치 안전성 확인 및 확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

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튜닝안전성확인장치 확인증 변경 내용

2.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7서식 튜닝안전성확인장치 확인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튜닝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7(튜닝 비용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 시 필요한 장치 및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튜닝 비용 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튜닝 비용 지원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튜닝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규모 및 신청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은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안전성 확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튜닝 비용 지원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비용 지원에 따른 튜닝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56조의9(중전의 제56조의5)제4항 중 “제56조의11”를 “제56조의15”로 한다.

제56조의12(중전의 제56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4호의 6서식”을 “별지 제34호의8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34호의7서식”을 “별지 제34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56조의13(중전의 제56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4호의 6서식”을 “별지 제34호의8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4호의7서식”을 “별지 제34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56조의16(중전의 제56조의12)제2항 중 “별지 제34호의8서식”을 “별지 제34호의10서식”으로 한다.

제56조의17(중전의 제56조의13)제1항 중 “별지 제34호의9서식”을 “별지 제34호의11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4호의10서식”을 “별지 제34호의12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 중 “별지 제34호의11서식”을 “별지 제34호의13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4제1항 중 “별지 제34호의12서식”을 “별지 제34호의1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4호의13서식”을 “별지 제34호의15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8제2항 중 “별지 제34호의14서식”을 “별지 제34호의16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10제1항 중 “별지 제34호의15서식”을 “별지 제34호의17서식”으

로 한다.

제57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4호의16서식”을 “별지 제34호의18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34호의17서식”을 “별지 제34호의19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34호의18서식”을 “별지 제34호의20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34호의19서식”을 “별지 제34호의21서식”으로, “별지 제34호의20서식”을 “별지 제34호의22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13제1항 단서 중 “별지 제34호의21서식”을 “별지 제34호의2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지 제34호의22서식”을 “별지 제34호의24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15제2항제1호 중 “별지 제34호의23서식”을 “별지 제34호의25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34호의24서식”을 “별지 제34호의26서식”으로 한다.

제157조의2제4항제1호 중 “제56조의7”를 “제56조의1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6조의8”을 “제56조의12”로 한다.

별표 5의4의 제목 중 “제56조의7”를 “제56조의11”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2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34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26까지로 하고, 별지 제34호의6서식 및 별지 제34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의8서식(종전의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귀하란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8제2항 및 제56조의9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2항 및 제56조의1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의 지정란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7”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1”로 한다.

별지 제34의9서식(종전의 별지 제34호의7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8 제5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10서식(종전의 별지 제34호의8서식)의 귀하란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6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11서식(종전의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귀하란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3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7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12서식(종전의 별지 제34호의10서식)의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3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7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자 동 차 제 원 표									
1	제작자명 (최초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제작국가명)					
2	차명			6	종별				
3	형식			7	유형				
4	차대·차체형상			8	구분				
5	승차정원(명)			9	용도				
10	차량중량(kg)			()			사용연료		
11	최대적재량(kg)								
12	차량총중량(kg)			()			내연기관		
13	차체 제원 (mm)	길이		()		최고출력(ps/rpm)			
		너비		()					
		높이		()		기통수/총배기량 (cc)			
14	하대 내측 치수 (mm)	길이							형식
		너비							
		높이				개수			
15 하대옵셋트(mm)									최고출력(kW/rpm)
16	공차 시 하중 분포 (kg)	전	전축		()		정격전압/용량(V/Ah)		
			후축		()				
		후	전축		()		형식		
			중축		()				
			후축		()		개수		
17	적차 시 하중 분포 (kg)	전	전축		()				
			후축		()				
		후	전축		()		에너지소비효율 (km/ℓ, km/kWh, km/kg)		
			중축		()				
			후축		()		복합		
18	축별 설계 허용 하중 (kg)	전	전축						
			후축						
		후	전축				고속		
			중축						
			후축				정속		
19 축간거리(mm)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km)			
20 제작허용총중량(kg)									복합
21 모델연도						시가지			
28 구동방식									고속
29 차대번호(1 ~ 8자리)						전			
30 자율주행시스템									후
31 선택사양						종류			
32 비고									단수
						타이어 형식			
									전
						후			
									전축
						후축			
									전축
						중축			
									후축
						후축			

튜닝안전성확인장치 안전성 확인 및 확인증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15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본사		(전화 :) (팩스 :)			
		제조공장		(전화 :) (팩스 :)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직 위		e-mail				
신청품목 (브랜드명)	적용차량	가능차종 대상범위	장치 구분	인증목적 및 용도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6에 따라
 [] 튜닝안전성확인장치 안전성 확인을 신청합니다.
 [] 튜닝안전성확인장치 확인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안전성 확인 신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의 제원,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 3.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의 외관도 4.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에 관한 사후관리계획서 5. 그 밖에 튜닝부품인증기관이 튜닝부품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확인증 변경 신청	1. 튜닝안전성확인장치 확인증 변경 내용 2.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검토	→	안전성 확인	→	인증서 발급
신청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 기준 등) ① (생략)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1. (생략) 2. 삭제 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하여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튜닝하기 전의 상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1. (현행과 같음) 3. ----- ----- ---. ----- ----- ---. 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승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튜닝하거나, 승합자동차를 승용

태로 회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생략)

<신 설>

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단서 신설>

③ · ④ (생략)

제55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법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

가. ~ 마. (생략)

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나. (현행과 같음)

다.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튜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

. 다만, 튜닝하기 전
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

1. _____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2. (생 략)

<신 설>

<신 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튜닝 작업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추가 장치

2. (현행과 같음)

제56조의4(튜닝안전성확인장치)

① 법 제34조제4항에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호를 모두 만족하는 장치(이하 “튜닝안전성확인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1. 영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차축으로 한정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로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에 해당될 것

2. 해당 장치로 튜닝 시 튜닝 전·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튜닝안전성확인장치의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5(튜닝안전성확인장치

<신 설>

확인기준)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튜닝안전성확인장치의 확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을 것

3. 튜닝 과정에서 안전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튜닝안전성확인장치의 확인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6(튜닝안전성확인장치 확인절차)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튜닝안전성확인장치로 안전성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6서식 튜닝안전성확인장치 안전성 확인 및 확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확인을 받으려는 튜닝장치의
제원,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

3. 확인을 받으려는 튜닝장치의
외관도

4. 확인을 받으려는 튜닝장치에
관한 사후관리계획서

5. 그 밖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튜닝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안전성 확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
일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성 확
인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
다. 이 경우 안전성 확인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
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
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34

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 결과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7서식 튜닝안전성확인장치 확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튜닝안전성확인장치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확인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6서식 튜닝안전성확인장치 안전성 확인 및 확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튜닝안전성확인장치 확인증 변경 내용

2.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7서식 튜닝안전성확인장치 확인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튜닝 안전성 확인에

<신 설>

필요한 세부사항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7(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 비용 지원)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
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 시
필요한 장치 및 설치 비용을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
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튜
닝 비용 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튜닝 비용 지원 업무를 한
국교통안전공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에 따른 튜닝 비용을 지원하고
자 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규모 및 신청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지원 대상은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안전성 확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

	<u>에 따라 튜닝 비용 지원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비용 지원에 따른 튜닝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u>
<u>제56조의4</u> (생략)	<u>제56조의8</u> (현행 제56조의4와 같음)
<u>제56조의5</u>(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① ~ ③ (생략) ④ 튜닝부품인증기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u>제56조의11</u>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⑤ (생략)	<u>제56조의9</u>(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제56조의15</u>----- ----- ----. ⑤ (현행과 같음)
<u>제56조의6</u> · <u>제56조의7</u> (생략)	<u>제56조의10</u> · <u>제56조의11</u> (현행 제56조의6 및 제56조의7과 같음)
<u>제56조의8</u>(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생략) ②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u>별지 제34호의6</u>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u>제56조의12</u>(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별지 제34호의8</u>서식----- -----

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2. (생략)

③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
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
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따른 튜닝부
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6조의9(튜닝부품인증기관 지
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①
튜닝부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
4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호
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2.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7서
식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
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
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별지
제34호의9서식-----

-----.

제56조의13(튜닝부품인증기관 지
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① -

----- 별지 제34
호의8서식-----

-----.

1. · 2.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34호의9서식

고(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 ----- -----.
<u>제56조의10</u> · <u>제56조의11</u> (생략)	<u>제56조의14</u> · <u>제56조의15</u> (현행 제56조의10 및 제56조의11과 같음)
<u>제56조의12</u>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① (생략)	<u>제56조의16</u>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하 “업데이트”라 한다) 실시 5일 전까지 <u>별지 제34호의8서식</u> 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 자료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 ----- ----- <u>별지 제34호의10서식</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u>제56조의13</u>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u>별지 제34호의9서식</u> 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u>제56조의17</u>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① ----- ----- ----- ----- ---- <u>별지 제34호의11서식</u> ----- -----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10서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6조의14 ~ 제56조의17 (생략)

제57조의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4호의11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34호의12서식-----

-----.

제56조의18 ~ 제56조의21 (현행 제56조의14부터 제56조의17까지와 같음)

제57조의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① -----

----- 별지 제34호의13서식-----

-----.

② (생 략)

제57조의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① 법 제3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2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를 하려는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조건을 정하여 별지 제34호의13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제57조의8(내압용기검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4서식의 내압용기검사신청서에 해당 내압용기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의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① -----

----- 별지 제34호의14서식-----

-----.

② -----

별지 제34호의15서식-----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의8(내압용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34호의16서식-----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의10(내압용기검사의 생략)

① 법 제35조의6제6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가 전부 생략되는
내압용기제조자들은 별지 제34
호의15서식의 내압용기검사 생
략신청서에 검사의 생략에 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
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57조의11(내압용기장착검사)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사
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
의16서식의 내압용기 기술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기술검사의 신
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해
당 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4
호의17서식의 내압용기 기술검
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내압용기 기
술검사 결과서는 동일한 형식의

제57조의10(내압용기검사의 생략)

① -----

----- 별지 제34
호의17서식-----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의11(내압용기장착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34호의
18서식-----

-----.

1. ~ 4.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34
호의19서식-----

-----.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한 최초의 기술검사에 대해서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술검사에 합격한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4호의18서식의 내압용기 안전검사신청서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19서식의 내압용기장착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4호의20서식의 내압용기 장착검사필증을 내압용기 주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7조의13(내압용기재검사) ①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내압용기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1서식의 내

----.

④ -----

----- 별지 제34호의20서식-----

-----.

⑤ -----

-- 별지 제34호의21서식-----

----- 별지 제34호의22서식-----

-----.

제57조의13(내압용기재검사) ① -

-----.

---- 별지 제34호의23서식----

압용기 수시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수시검사 사유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실시한 검사대행자는 별지 제34호의22서식의 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생략)

제57조의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 등은 내압용기의 탈착 또는 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34호의24서식-----

-----.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의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발급하고, 그 발급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34호의23서식의 내압용기 교체증명서
2.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 제조자등: 별지 제34호의24서식의 내압용기 파기증명서

③ (생 략)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6조의7 및 별표 5의4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

-----.

1. -----
----- 별지 제34호의25서식-----

2. -----

----- 별지 제34호의26서식-----

③ (현행과 같음)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제56조의11 -----

2. 제56조의8에 다른 튜닝부품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⑤ · ⑥ (생략)	2. 제56조의12----- ----- ⑤ · ⑥ (현행과 같음)
---	--